



# EU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

January 2023



## Contents

- 1 적용 범위 및 시기
- 2 공시 주요 항목 및 내용
- 3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준비

EU는 기후 및 환경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EU 경제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담은 로드맵이자 정책 패키지인 'European Green Deal(이하, EU 그린딜)'을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어서, EU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판단,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sup>1</sup>을 마련하였다. 동 전략의 추진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sup>2</sup>'이다. EU집행위는 2021년 4월 CSRD 초안을 제안하였고, 긴 협의 끝에 2022년 11월 28일 EU 이사회로부터 최종 승인, 12월 16일에 EU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이 지난 2023년 1월 6일 최종 효력이 발생하였다.

CSRD 이행을 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sup>3</sup>를 개발하여 지난해 11월 ESRS First Set(공통 기준, 주제별 기준)을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기준은 올해 6월 확정될 예정이다.



글로벌 주요 3대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중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CSRD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EU 소재 종속기업 또는 지점이 있는 기업들이 준비해야하는 사항들도 보다 구체화되었다. 우리 기업들이 특히 주목해야하는 지침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은 2018년 EU의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후속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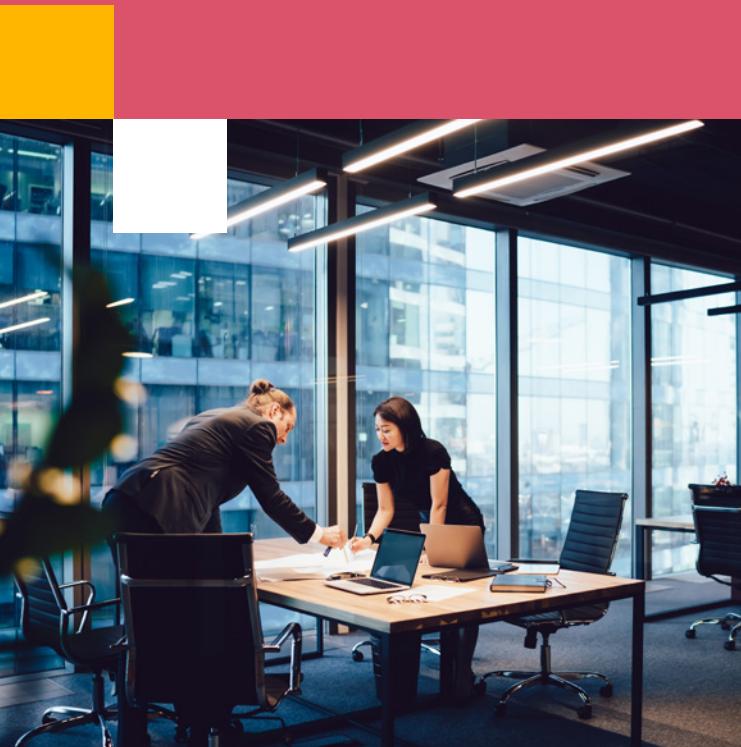
2 CSRD는 2014년 제정된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대폭 수정

3 ESRS는 First Set(공통 기준, 주제별 기준)과 Second Set(산업별, Non-EU 기업, 상장 중소기업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ond Set 초안은 연내 마련되어, 2024년 EU집행위가 입법화 예정

# 적용 범위 및 시기

CSR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EU 내 기업 뿐만 아니라 Non-EU 기업에 까지 확대 적용된다

우리 기업들도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EU가 정한 공시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 ✓ CSRD에 따른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EU 소재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 ✓ 동 회사들의 대부분은 글로벌 전체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 기준으로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 Non-EU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공시 범위 및 시기

\*EU회원국들은 CSRD를 기준으로 별도 국내법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국가별 상세 법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공시 시기 등의 구체적인 지침은 EU CSRD와 상이할 수 있다.

구분	대상회사	공시범위	의무 공시 및 인증 <sup>5</sup> 시기
1	기존 NFRD 적용 대상 회사 즉, EU 소재 종속기업이 임직원 500명 이상의 EU 상장사, 은행, 보험회사	EU 소재 종속기업이 직접 ESRS 보고	FY24
2	Non-EU 지배기업이 EU 규제 시장에 채권 또는 주식을 상장한 경우	해당 Non-EU 지배기업이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ESRS 보고	FY25
3	EU에 상장한 Non-EU 지배기업(상기 2번 해당 기업)의 EU소재 종속기업이 대기업 <sup>4</sup> 인 경우	EU 소재 종속기업이 직접 ESRS 보고	FY25
4	Non-EU 지배기업이 EU 역내에 하나 이상의 대기업을 소유한 경우	EU sub-group이 있는 경우, 해당 sub-group의 연결 기준 ESRS 보고  EU sub-group이 없는 경우, EU에서 가장 큰 종속 기업이 모든 EU 소재 종속기업의 정보를 취합 보고	FY25
5	(조건1) Non-EU 지배기업의 연결 매출액이 지난 2년 동안 연간 1억5천만 유로 이상  (조건2) EU에 있는 종속기업이 대기업이거나 상장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EU에 있는 지점이 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Non-EU 지배기업의 글로벌 전체 연결 기준으로 보고 (Non-EU 기업을 위한 특정 공시 기준 적용 예정)	FY28
6	Non-EU 지배기업의 EU 소재 종속기업이 상장한 중소기업	EU 소재 종속기업이 직접 ESRS 보고	FY26 (2년간 유예기간 적용)

4 대기업(Large Undertakings) 기준: 2년 연속으로 하기 조건 중 2가지 해당

→ 총 자산 규모 2천만 유로(약 267억 원) 초과 / 순 매출 4천만 유로(약 534억 원) 초과 / 평균 직원 수 250명 초과

5 CSRD 지침이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을 시작으로, 향후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 기준 채택 예정  
(상세내용 추후 발표)

# 공시 주요 항목 및 내용

CSRD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의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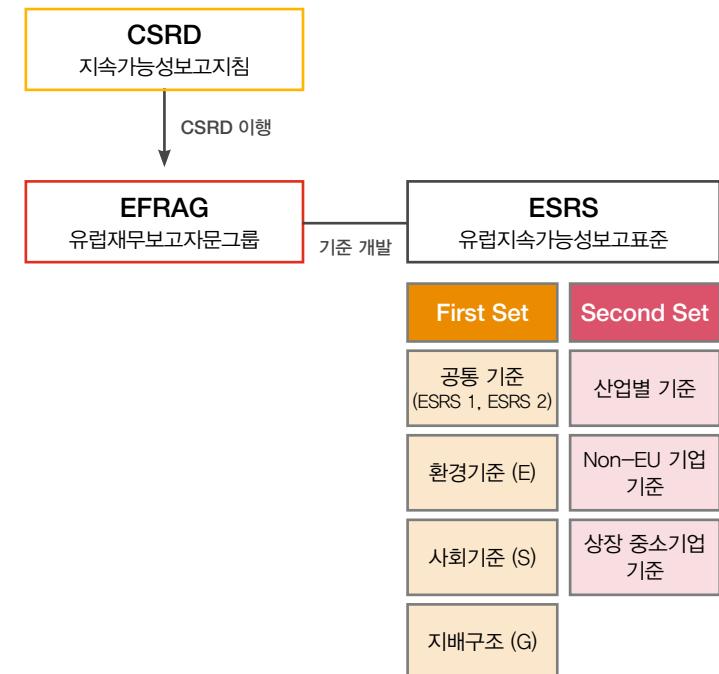
이러한 목표에 따라 CSRD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CSRD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순한 규정 준수하는 개념이 아닌, 기업의 행동 변화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SRD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은 EFRAG가 개발한 기준인 ESRS가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First Set<sup>6</sup>는 공통 기준 2가지(ESRS 1, ESRS 2)와 10가지 주제별 기준(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을 포함한 총 12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ond Set<sup>7</sup>(산업별, Non-EU 기업, 상장 중소기업 기준)은 올해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SRS 1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하고 적용해야 할 개념과 원칙을 담고 있으며, ESRS 2는 공통적인 공시 요구 항목(기업 일반 정보 및 사업개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전략과 지배구조 및 리스크와 기회 관리, 중요성 평가 사항 등)을 제시한다.

주제별 공시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기준(E)은 5가지 보고서(E1: 기후변화, E2: 오염, E3: 물과 해양자원,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5: 자원사용과 순환경)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기준(S)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S1: 인력, S2: 가치 사슬 내 근로자, S3: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다. 지배구조(G)는 기업 문화 및 정책, 사업 수행의 전략, 부패 및 뇌물 사건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으로 기업의 전반적 운영과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G1: 사업수행)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들은 ESRS 2에 명시된 중요성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 거버넌스 역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즉, ESRS 2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에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이슈와 기업의 활동이 환경 및 사회 등에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이슈(예: E1 기후변화, S1 인력 등)를 선정하여, 선정된 이슈에 대한 공시 주요 내용(다음 도표의 우측 참고)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6 2023년 6월, 최종안 확정 예정

7 연내 초안 마련, 2024년 입법화 예정

## ESRS 기본 구성



## 공시 주요 내용

-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양립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계획을 포함
- **지속가능성 목표 및 목표 달성을 과정**  
최소 2030년, 가능한 경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수치 및 과정 포함
- **지속가능성 관련 행정 · 경영 · 감독 조직 구성원의 역할, 전문성**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 **자사와 자사의 공급망 전 영역의 실사 진행 및 절차 공시**  
실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예방 · 완화 · 조치하는 등 일련의 전 과정
- **지속가능성 위험과 이에 대한 관리**
- **중대성 평가: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식별 과정**
- **전반적인 가치 사슬: 운영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및 공급망 포함**

## CSRD 주요 특징

### 1.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의 내부적·외부적 관점 모두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 및 보고

CSRD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대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다른 공시 기준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반면, CSRD는 기업의 활동이 사회나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러한 이중 중대성을 평가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제 3자 검증: ‘제한적 인증’에서 ‘합리적 인증’으로 단계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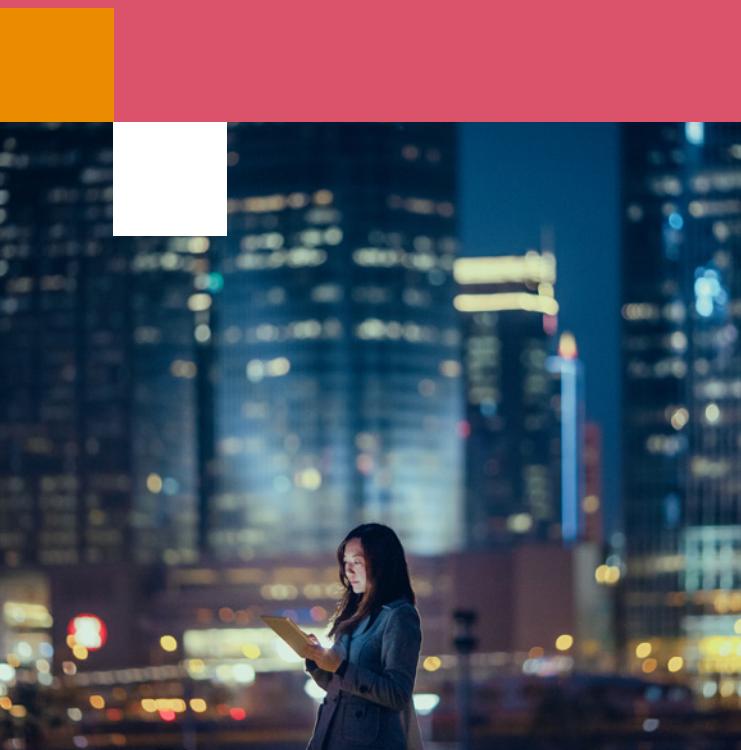
CSRD는 기업들이 공시한 보고서 내용의 인증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초기에는 제3자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으로 시작하여, 향후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으로의 단계적 검증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준비 사항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의 적용 대상이 EU 및 Non-EU 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가치사슬 전반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해당 지침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롭게 도입될 ESRS 공시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빨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CSRD에서 정한 Non-EU 기업 기준 공시 대상 범위에서 우리 기업이 어디에 위치하고,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상기 'Non-EU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공시 범위 및 시기' 참조)

- ✓ 국내 기업이 EU regulated market에 상장되어 있는지?
- ✓ 공시의무를 발생시키는 EU 소재 종속기업이 어디인지?
- ✓ 공시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예: EU 소재 개별 종속기업 수준, EU sub-group 수준, Non-EU 모회사의 글로벌 전체 연결 수준)

**둘째,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CSRD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스코프 1, 2) 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스코프 3) 배출량 및 인권 및 근로환경, 인권 문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자사에서 발생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이슈들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준비가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내재화와 전문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동 지침에서는 제3자에 의해 ‘검증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동시에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역량 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감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넷째, 공시 기준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FRAG는 현재까지 공통기준과 주제별 기준을 담은 First Set 초안을 발표하였고, 추후 ‘산업별, Non-EU 기업, 상장 중소기업 대상 공시 기준’을 포함한 Second Set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다가 이미 발표된 First Set 또한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변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업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공시 요건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CSRD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EU 회원국 모두에게 일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EU 회원국들은 CSRD 내용을 반영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자회사 및 지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현황 모니터링, CSRD 내용과의 비교 등 상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다른 공시 제정 기관의 기준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U집행위는 Non-EU 기업의 경우 공시 정보가 CSRD와 동등한 수준일 경우 타 공시 기준 적용도 허용하고 있고, 기발표된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의 연계성을 확보하겠다고 지난해 ISSB가 발표한 바 있다. 아직 공시 기준 간 ‘동등성’과 ‘연계성’, 다시 말해, ESRS의 공시 항목이 또 다른 공시 기준인 ISSB의 IFRS S1, S2의 공시 요구 항목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공시 기준 간 공통점과 차이점 정도를 파악해 둘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3대 공시 지침 중 CSRD가 가장 먼저 발표되었다는 점은 CSRD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다른 공시 기준에 영향을 주거나 글로벌 공통 공시 기준 제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CSRD를 중심으로 여러 공시 기준을 유심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이해한 기업일수록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보다 수월하게 공시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 References

1. PwC, EU Newsletter Sustainability Reporting
2. PwC, Navigating the ESG landscape
3. EU Council,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CSRD)

PwC Korea  
ESG Platform

ESG Platform Leader

스티븐 강 Partner  
steven.c.kang@pwc.com  
+82-2-709-4788

삼일PwC

Assurance

권미업 Partner  
miyop.kwon@pwc.com  
+82-2-709-7938

이진규 Partner  
jin-kyu.lee@pwc.com  
+82-2-3781-9105

Tax

심수아 Partner  
sooa.shim@pwc.com  
+82-2-3781-3113

김홍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82-2-709-3320

Deals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82-2-3781-2501

서용태 Partner  
yong-tae.seo@pwc.com  
+82-2-3781-2340

삼일PwC  
Markets

장은영 Director  
celia.e.jang@pwc.com  
+82-2-3781-0057

윤이나 Senior Associate  
ena.yun@pwc.com  
+82-2-709-8539

PwC컨설팅

윤영창 Partner  
youngchang.yun@pwc.com  
+82-2-709-3354